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기획조정실-5954 |
| 보존기간 | 영구 |
| 결재일자 | 2015.10.08. |
| 공개여부 | 공개 |
| 방침번호 | 이사장 방침 제 177호 |

| ★과장 | 팀장 | 기획조정실장 | 경영지원본부장 | 이사장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|
| | | | | |
| 협 조 | 시설안전본부장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정관 중 개정정관(안) [제496회 이사회 부의안]

2015.

부 의 안

| 제496회 이 사 회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일 자 | 2015. 10. | 의안번호 | 제 호 |
| 의 제 | 정관증개정정관(안) 제 호 | | |
| 구 분 | 의 결 사 항 | | |

○ 제 안 자 : 기획조정실장

○ 주 문 : 정관증개정정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.

○ 제안사유

- 은평공동구 관리업무의 신규수탁('15.9.18, 시의회 가결)에 따른 운영인력 정원을 반영하고,
- 기존 상계공동구 야간감시 기능 등 안전강화를 위한 관련인력 일부 증원
- 기타 이사회 운영관련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용어의 정비·보완

○ 의결사항 : 주문과 같음

○ 참고사항

1. 관련근거

- 공동구 관리 민간위탁 (재)계약 추진계획(은평공동구 인수포함)
(도로시설과-9033호, '15.7.29)
- 은평공동구 조직,인력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('15.9.15)
- 은평공동구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('15.9.18)

2. 절 차 : 이사회 의결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
시장인가 후 공포·시행

정관증개정정관(안)

(제안요지)

1. 제안이유

- 은평공동구 관리업무의 신규수탁('15.9.18, 시의회 가결)에 따른 운영인력 정원을 반영하고,
- 기존 상계공동구 야간감시 기능 등 안전강화를 위한 관련인력 일부 증원
- 기타 이사회 운영관련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용어의 정비·보완

2. 주요내용 — 정원 증원 7명(제22조 “별표2”)

가. 은평공동구 신규인수 및 상암공동구 통합관리에 따른 증원

- 정원증원 : 일반직(3급 이하) + 5명

<은평공동구 운영 기본방향> * 市도로시설과-9033호, '15.7.29

✓ 주간 1인, 야간은 무인운영 및 상암공동구와 통합 관리

✓ 은평공동구 순찰, 정비, 상황감시 등 행정지원은 상암공동구에서 시행

나. 상계공동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야간감시 인력 보강

- 정원증원 : 일반직(3급 이하) + 2명

⇒ 現인원 6명(야간 1명 배치)에 따른 안전감시기능 취약요인 개선

※ 공동구별 관리인력(정원)

| 구분 | 계 | 본사 | 여의도 | 목동 | 가락 | 개포 | 은평/상암 (통합) | 상계 |
|----|------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현행 | 63 | 10 | 10 | 13 | 10 | 8 | 6 | 6 |
| 증원 | 7 | - | - | - | - | - | 5 | 2 |
| 개편 | 70 | 10 | 10 | 13 | 10 | 8 | 11 | 8 |

다. 이사회 의사록 작성 관련,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비·보완

- 서명방식 추가 : (현행)기명날인 ⇒ (개정)기명날인 또는 “서명”

라. 부칙신설

- 제1조(시행일) 공포일부터 시행
- 제2조(다른규정의 개정) 직제규정 제14조(정원) “별표2”의 개정은 이 정관 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봄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공동구 관리 민간위탁 (재)계약 추진계획(은평공동구 인수포함)
(도로시설과-9033호, '15.7.29)
- 은평공동구 조직,인력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('15.9.15)
- 은평공동구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('15.9.18)

나. 절 차 : 이사회 의결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

시장인가 후 공포·시행

정관중개정정관(안)

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(조직 및 정원)의 “정원은 “별표2”와 같으며---” 를 “정원은 “별표2”와 같으며”로 한다.

제29조(의사록 작성) 중 “기명날인”을 “기명날인 또는 서명”으로 한다.

“부칙” 을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규정의 개정) 직제규정 제 14조(정원) “별표2”의 개정은 이 정관 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비 고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2조(조직 및 정원) ①공단의 ---, 정원은 “별표2”와 같으며,----정한다. | 제22조(조직 및 정원) ①공단의 ---, 정원은 “별표2”와 같으며,----정한다. | 조문변동 없이 “별표2”만 변경 (별지 참조) |
| 제29조(의사록 작성)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| 제29조(의사록 작성)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| 서명방식 추가 |
| 부 칙 (신 설) |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(다른규정의 개정) 직제규정 제 14조(정원) “별표2”의 개정은 이 정관 개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본다. | |

〈별표 2〉 (현행)

정 원 표

【 총 정원 : 2,163명】

임원 및 일반직, 서비스직

(단위 : 명)

| 구분 | 계 | 임원 | 일 반 직 | | | | 서비스직 |
|-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|----|-------|------|
| | | | 소계 | 1급 | 2급 | 3급 이하 | |
| 정 원 | 2,163 | 5 | 1,696 | 22 | 41 | 1,633 | 462 |

※ 부서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

〈별표 2〉 (개정)

정 원 표

【 총 정원 : 2,170명】

임원 및 일반직, 서비스직

(단위 : 명)

| 구분 | 계 | 임원 | 일 반 직 | | | | 서비스직 |
|-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|----|-------|------|
| | | | 소계 | 1급 | 2급 | 3급 이하 | |
| 정 원 | 2,170 | 5 | 1,703 | 22 | 41 | 1,640 | 462 |

※ 부서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